

붙임3

가산점 기준

대상	세부내용적용	가산점 기준	증명서류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 (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4.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 대학을 졸업한 사람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2점 * 대학원 이상 제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 2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및 다문화가족 확인서																
6. 자립준비 청년	「이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선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 자립준비 청년 : 2점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자립수당)통지서																
7.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가산점</th> <th>대상 자격증</th> </tr> </thead> <tbody> <tr> <td>5점</td> <td>의사(전문의)</td> </tr> <tr> <td>4점</td> <td>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3점</td> <td>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td> </tr> <tr> <td>2점</td> <td>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td> </tr> <tr> <td>1점</td> <td>정보처리기사</td> </tr> </tbody> </table> <p>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p>	가산점	대상 자격증	5점	의사(전문의)	4점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	3점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	2점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점	정보처리기사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가산점	대상 자격증																		
5점	의사(전문의)																		
4점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																		
3점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																		
2점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점	정보처리기사																		
8.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 (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	외부전문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소지자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성적표																
*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가산점</th> <th>TOEIC</th> <th>TOEFL(IBT)</th> <th>TEPS</th> </tr> </thead> <tbody> <tr> <td>2점</td> <td>900점 이상</td> <td>105점 이상</td> <td>370점 이상</td> </tr> <tr> <td>1점</td> <td>850점 이상</td> <td>98점 이상</td> <td>336점 이상</td> </tr> <tr> <td>0.5점</td> <td>800점 이상</td> <td>91점 이상</td> <td>309점 이상</td> </tr> </tbody> </table>				가산점	TOEIC	TOEFL(IBT)	TEPS	2점	900점 이상	105점 이상	370점 이상	1점	850점 이상	98점 이상	336점 이상	0.5점	800점 이상	91점 이상	309점 이상
가산점	TOEIC	TOEFL(IBT)	TEPS																
2점	900점 이상	105점 이상	370점 이상																
1점	850점 이상	98점 이상	336점 이상																
0.5점	800점 이상	91점 이상	309점 이상																

대상	세부내용적용	가산점 기준	증명서류
9.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1년 이상 법안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성적평정 “가” 평기를 받지 않은 사람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가산점 부여 - 기간제 근로자: 5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p>※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중복 시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반영, 가산점이 각 대상 항목(1-9)에서 중복 시 유리한 가산점 1개만을 반영함</p> <p>※ 공인어학점수 소지자 가산점은 국제협력업무 등 어학 능력이 필요한 직무 채용 시에만 가산하며, 채용공고 시 안내</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채용 분야별·직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p> <p>※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및 「연구사업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에 해당하는 사람(무기계약근로자 및 청년인턴 제외)</p>			